

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2017-109

제출일 : 2017. 8. .

제출자 : 거창군수

1. 요구이유

-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명: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

나. 시설현황

- 위치: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
- 규모: 부지면적 4,283㎡(건축 연면적 2,568) 지하1층, 지상4층
- 병상규모: 130병상
- 세부시설현황
 - 지하1층: 기계실, 보일러실, 발전실
 - 지상1층: 외래진료실, 물리치료실, 약제실, 행정실, 임상병리실
 - 지상2, 3층: 간호사실, 입원병실
 - 지상4층: 식당
- 의료장비 및 물품: 325종 / 2,872개

다. 그간 운영 상황

- 수탁기관: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
- 위탁기간: 2007. 10. 23. ~ 2017. 10. 22.(10년간)

○ 진료실적 현황(최근 5년간)

구분(년도)	합 계	외래환자	입원환자		비고
			전체입원환자수	거창군거주환자수	
계	10,298	9,169	1,129	962	
2012년	1,196	959	237	195	
2013년	2,417	2,179	238	206	
2014년	3,753	3,559	194	173	
2015년	2,094	1,877	217	189	
2016년	838	595	243	199	

○ 인증의료기관 획득(2015년도)

- 인증기간: 2015. 8. 9. ~ 2019. 8. 5.(4년간)
- 평가기관: 보건복지부/의료기관평가인증원
-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증

○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(의사, 간호인력 가산등급)

- 최근 5년간(2012년 ~ 2016년) 1등급
- 산정기관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○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

라. 재위탁 추진 상황

- 수탁기관(서경병원) 재수탁신청서 제출: 2017. 6. 14.
-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: 2017. 6. 23.
- 재위탁 심의위원회개최: 2017. 7. 6.
- ※ 심의위원: 7명(재 위탁 가결)

마. 향후 추진계획

- 재수탁기관: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
- 위탁기간: 2017. 10. 23. ~ 2022. 10. 22.
- 위탁내용
 - 치매환자의 진료 및 입원 관리
 - 거창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
- 위·수탁 운영계약서 공증 및 계약체결: 2017. 9월

3. 참고사항

가. 경남지역 공립요양병원 위탁 현황

(2016. 12월말)

병원명 (수탁운영자)	규모 (병상)	입원 환자	직원 (의사)	위탁기간 (계약횟수)	비고
도립사천 노인전문병원	228	193	97 (6)	2013.10.11 ~ 2018.10.10 (5년, 1회)	2018년
도립통영 노인전문병원	280	250	124 (8)	2016. 6.11 ~ 2019. 6.10 (3년, 4회)	2016년 재위탁
도립김해 노인전문병원	199	172	82 (5)	2017. 7.12 ~ 2020. 7.11 (3년, 5회)	2017년 재위탁
도립양산 노인전문병원	199	194	75 (6)	2017. 7.12 ~ 2020. 7.11 (3년, 5회)	2017년 재위탁
시립창원요양병원	175	168	64 (5)	2013. 1. 1 ~ 2017.12.31 (4년, 2회)	2017년말
시립마산요양병원	295	295	128 (10)	2008 10 30 ~ 2018 10.29 (10년, 1회)	2018년
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	128	126	67 (5)	2016. 5. 1 ~ 2021. 4. 30 (5년, 1회)	2016년 수탁자계약 포기로 공고
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	95	95	46 (2)	2008. 4.22 ~ 2018. 4.21 (10년, 1회)	2018년

나. 재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

- 오랜 기간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축적된 경험과 환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함
-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인 서경병원과 연계로 빠른 조치 가능

다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운영조례」 제4조

관 계 법 령(요약)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(행정과)

(제정) 1999.07.15 조례 제1515호
(일부개정) 2013.06.12 조례 제2138호
(일부개정) 2014.05.28 조례 제2192호

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(보건소)

(제정) 2004.02.10 조례 제1702호
(일부개정) 2005.10.05 조례 제1765호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(일부개정) 2012.11.07 조례 제2113호

제 4조 (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.(개정 2005.10. 5)(2012.11.07.)

1. 의료법인(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)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「민법」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

3.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05.10. 5)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(개정 2005.10. 5)(개정 2012.11.07.)

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4.1.7., 2015.1.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8., 2014.1.7., 2015.1.20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. <개정 2010.2.4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2.4.>